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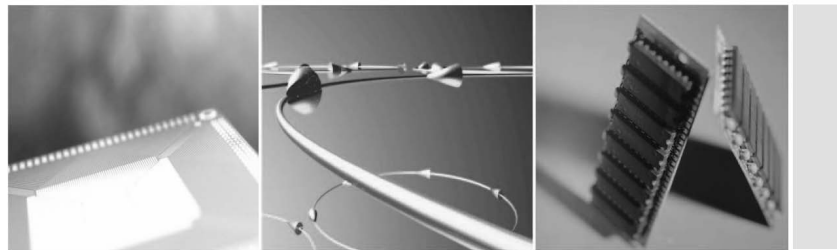
KISDI 이슈리포트

미 FCC 무선통신 허가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해설(미 통신법 310조)

2005. 9. 20

강하연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강하연

- tumest@kisdi.re.kr, 02-570-4280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국제관계학 학사
-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정치학 석사
- Northwestern University 정치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본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요 약

WTO, FTA, 한·미 통상협상의 주요 협상 주제 중 하나는 시장접근 제한요소로 존재하는 지분제한에 대한 완화논의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국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또한 무선분야에 있어서 엄격한 지분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외국인의 통신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금지하고 있다. 이 리포트는 미국이 현재 무선 사업자에 대하여 유지하고 있는 지분제한을 미 통신법 제310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외국의 사업자가 미국 통신시장에 진출할 경우를 가정하여 접근함으로써 미국의 지분제한과 통신사업자에 지배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의 무선사업자에 대한 투자 심사는 통신법 제310(b)(3)조 및 제310(b)(4)조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다. 우선 제310(b)(3)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0(b)(3)조의 지분상한선 20% 계산 시 해당 licensee(무선허가자 등 허가소지자)에 대한 외국인의 모든 직, 간접 비통제 지분(non-controlling interest)을 합하여 계산한다. 즉, 외국인이 직접투자하거나 지주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지주회사가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제310(b)(3)조는 외국인의 무선사업자에 대한 지분의 “소유”(ownership)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제310(b)(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10(b)(4)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간접투자”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외국인이 미국 내에 설립한 지주회사(domestically organized holding company)를 매개로 하여 무선허가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가 무선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본 조항 적용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동 지주회사가 무선사업자에 대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또는 실질적 경영권/통제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10(b)(4)조는 제310(b)(3)조와 달리 외국인의 무선사업자에 대한 “통제”(control)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본 리포트는 미 통신법의 외국인 투자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직접·간접투자에 대한 미국의 법제상 의미를 파악하여 미국 통신시장의 실질적 개방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310(b)(3)조와 제310(b)(4)조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외국인 투자지분 계산방법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통신법 제310조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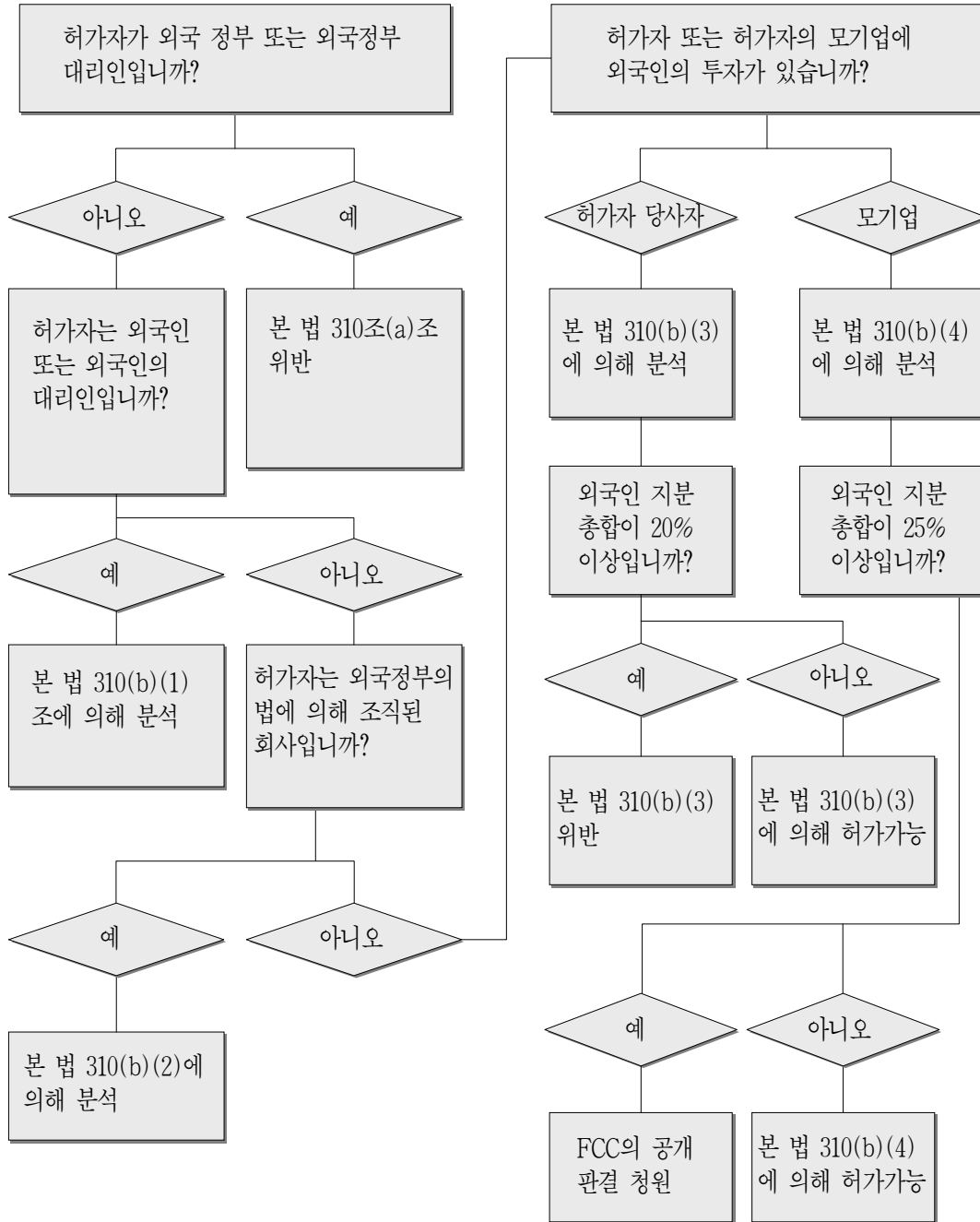
제310조 무선허가의 소유 및 이전에 대한 제한사항

- a) 외국정부 또는 정부의 대리인은 무선국허가를 소유하거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b)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방송, 기간사업자, 항공이동무선국 또는 무선관제국의 허가가 부여될 수 없으며 허가를 보유할 수 없다.
 - 1)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대리인인 경우
 - 2)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경우
 - 3) 외국인(외국정부, 외국정부의 대리인, 외국인, 외국인의 대리인, 외국법인)이 주식의 1/5(즉, 20%)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이 행사되는 회사
 - 4) 외국인이 주식의 1/4(즉, 25%)을 초과하여 소유한 회사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통제되는 회사로서 FCC가 허가의 거절 또는 취소로 공익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Section 310. Limitation on Holding and Transfer of Licenses

- (a) The station license required under this Act shall not be granted to or held by any foreign government or representative thereof.
- (b) No broadcast or common carrier or aeronautical en route or aeronautical fixed radio station license shall be granted to or held by-
 - (1) any alien or the representative of any alien;
 - (2) any corpor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any foreign government;
 - (3) any corporation of which more than one-fifth of the capital stock is owned of record or voted by aliens or their representatives or by a foreign government or representative thereof or by any corpor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a foreign country;
 - (4) any corporation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ed by any other corporation of which more than one-fourth of the capital stock is owned of record or voted by aliens, their representatives, or by a foreign government or representative thereof, or by any corpor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a foreign country, if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public interest will be served by the refusal or revocation of such license.

□ 무선허가자의 외국인 투자지분 계산 및 심사 과정



○ 본 법 310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 허용 대상

- 외국정부 또는 정부의 대리인은 본 법 310(a)조에 의거 투자 불가
- 외국인 또는 외국의 대리인은 본 법 310(b)(1)조에 의거 투자 불가
- 외국회사 외국법에 의해 조직된 회사는 본 법 310(b)(2)조에 의거 투자 불가
- 그러나, 외국정부, 외국인 및 외국회사의 licensee¹⁾에 대한 간접적 통제(indirect foreign control of licensee)는 허용²⁾
 ⇒ 외국인의 미국 무선허가자에 대한 투자는 FCC가 간접적 통제라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만 허용

○ FCC가 밝히는 본 법 310조에 의한 외국인³⁾의 무선허가자에 대한 투자 방법

(1) 외국인 투자자가 무선허가자의 자본금(capital stock)⁴⁾의 20%까지 직접 투

- 1) 본 법 310조는 미국 라디오 기간사업자(common carrier), 방송 및 항공이동무선국, 무선관제국등을 다 포함하는 명칭으로 “허가소지자”(licensee)라는 표현을 씀. 본 글에서는 licensee를 편의상 무선허가자 또는 무선허가사업자라고 지칭한다.
- 2) “Section 310(a) however does not expressly prohibit indirect foreign government control of licensees”, “Section 310(b)(1) does not bar indirect foreign control of a US domestic licensee that holds licenses”, “Section 310(b)(2) does not expressly prohibit indirect foreign control of licensees”, FCC Foreign Ownership Guideline, p.6
- 3) 여기서의 “외국인”은 외국정부, 외국인, 외국회사 모두를 지칭
- 4) “capital stock”의 정의를 FCC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the Commission has interpreted the term ‘capital stock’ to include not only the individual shareholdings of the corporate parent, but also the many ‘alternative means by which equity or voting interests are held in these [non-corporate entities]’”자본금(capital stock)은 모회사에 대해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뿐만 아니라, 동 非법인(non-corporate entities)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선택적 수단에 의해 갖고 있는 주식이나 의결권도 포함된다. FCC Foreign Ownership Guidelines, p.22.
 또한, FCC에서 말하고 있는 “자본금”은 우선주, 보통주, 의결권주, 비의결권주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지칭하고 있다. “encompass various classes of stock, including preferred stock, common stock, voting stock, non-voting stock, and non-voting stock convertible to voting stock”, Gavillet et al, “Struc-

자를 한 경우 → 본 법 310(b)(3)조 적용

– 가장 간단한 투자방법이지만 FCC도 밝히고 있듯이 드뭄⁵⁾

(2) 외국인이 어느 회사를 매개로 무선허가자에 투자하는데, 동 매개회사의 무선허가자에 대한 보유지분이 비통제지분(non-controlling interest)인 경우

→ 본 법 310(b)(3)조 적용

– 비통제지분(non-controlling interest)이란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 지분이 50% 이하, 즉 49%까지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일컬음⁶⁾

– FCC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비통제지분을 본 법 310(b)(3)조에서 정의하는 무선허가자에 대한 외국인의 자본스톡 보유한도(ownership of capital stock)⁷⁾ 20%에 포함된다고 해석

– 위에서 정의하는 매개회사(intervening company)는 일반 회사 또는 지주 회사이며, 증권회사, 펀드 같은 회사인 경우

– 즉, 본 법 310(b)(3)조 적용은 외국인이 투자한 매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무선허가자에 대한 지분이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을 경우

– 다만, FCC는 매개회사를 통하여 지분보유가 이루어진 경우와 무선허가자에 대해 직접 지분을 보유해서 행사되는 외국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다르게 보고 있음⁸⁾

turing Foreign Investments in FCC Licensees under Section 310(b) of the Communications Act”, p.25

5) “The majority of cases where foreign ownership is an issue implicate Section 310(b)(4) of the Act”, FCC Foreign Ownership Guideline, p.7

6) FCC는 무선허가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이 비통제지분(경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지분, 통상적으로 50% 미만)인 경우 본 법310(b)(3)조를 적용하고 통제지분(50% 이상, 또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majority share)인 경우 본 법 310(b)(4)를 적용하고 있다.

7) “To determine whether foreign ownership is within the 20% ownership limitation, **all direct and indirect non-controlling interests in the licensee held by aliens are aggregated**”(Gavillet, et al. “Structuring Foreign Investments in FCC Licensees under Section 310(b) of the Communications Act”)

- 따라서 FCC는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지분 계산 방법을 달리함
- (3) 외국인 투자자가 지주회사에 투자, 동 지주회사가 무선허가자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본 법 310(b)(4)조 적용
 - 즉,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가 무선허가자에 대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동 지주회사가 무선허가자에 대해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 경영권/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 본 법에 의거 외국인의 투자지분은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 25%까지 가능
 -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는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가 가장 많으며, 따라서 대개의 외국인 투자심사는 본 법 310(b)(4)조에 해당⁹⁾
 - 본 법 310(b)(4)조는 외국인이 무선허가자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영향력 행사의 유무 여부는 “공익성 심사” 및 “실질적 통제(de facto control) 심사”를 통해 함
 - ⇒ FCC의 본 법 310(b)(3)조 및 310(b)(4)조의 적용은 외국인이 무선허가자에 대해 지분을 소유(ownership) 또는 통제(control)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음
 - ⇒ 즉, FCC는 본 법310조를 적용하는데 있어 외국인 무선허가자에 대한 소유지분을 합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는 본 법 310(b)(3)조 해당, 외국인의 무선허가자에 대한 통제력의 크기를 계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는 본 법 310(b)(4)조 해당
 - ⇒ 본 법 310(b)(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0% 지분제한선은 무선허가자에 대한 자본스톡 20%(capital stock 20%)의 개념으로, 무선허가자에 대한 모든 직접 및 간접 비통제권 지분 보유를 일컬음

8) “the degree of influence over the license conveyed indirectly through minority stock ownership or voting rights in a company which, in turn, holds stock in a license is not as great as that conferred by the possession of the same amount of stock directly in the licensee”, FCC Guideline

9) FCC Foreign Ownership Guideline,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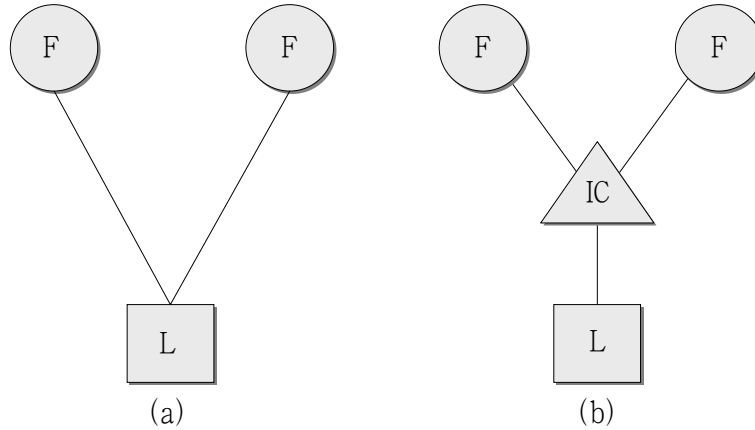
- ⇒ 본 법 310(b)(4)조를 적용하는데 있어 “통제지분”(controlling interest)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는 무선허가자에게 대해 50% 이상 지분을 갖는 경우로 보고 있음. 즉,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가 무선허가자에 대해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
- ⇒ 즉, 본 법 310(b)(3)조 와 310(b)(4)조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직접 투자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음
통상적으로 본 법 310(b)(3)조는 직접투자, 본 법 310(b)(4)조는 간접 투자 조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FCC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본 법 310(b)(3)조 하에서 직접, 간접 투자가 둘 다 가능¹⁰⁾

○ 외국인 투자지분 계산 방법

- FCC는 외국인의 소유지분 계산 시 무선허가자에 대한 모든 수직적 소유사슬 구조(vertical ownership chain)를 고려함
- 외국인 투자지분의 계산은 아래에 설명하듯이 투자자의 영향력의 크기를 계산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외국인 투자자가 매개회사를 통한 수직적 지분사슬 구조의 형태를 띠는 경우 그 영향력의 크기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분 계산 시 승수(multiplier)를 적용
- FCC의 승수 사용의 논리는 수직적 소유사슬 구조상 무선허가자에게서 멀리 있을 수록 그 영향력이 희석(dilute)되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만약에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통제지분인 경우 동 영향력이 희석된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승수 사용을 안함

10) 위에서 설명했듯이, 만약 외국인 투자자가 어느 회사를 매개로 무선허가자에 투자하는 경우, 동 매개 회사의 무선허가자에 대한 보유지분이 비통제지분인 경우, 본 법 310(b)(3)조 적용을 받으며, 그 투자 구조는 외관상 간접투자자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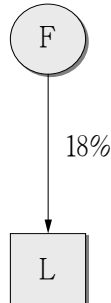
(1) 본 법 310(b)(3)조 적용 경우



비고: F=외국인 투자자, L= 무선허가자(사업자), IC = 매개 회사(intervening company)

- 위의 그림 (a)는 외국인 투자자 F가 무선허가자(사업자) L에 대해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이며, 그림 (b)는 외국인 투자자 F가 매개회사(예컨대 증권회사, 펀드, 지주회사 등) IC를 통해 무선허가자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인데, (a)의 경우 투자지분을 그대로 합산하지만, (b)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매개회사에 투자하였으므로 비통제지분의 유무에 따라 승수를 적용함
- 본 법 310(b)(3)조의 가장 특징적 포인트: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무선허가자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투자지분은 비통제지분(non-controlling interest), 즉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지분이어야 함

(i) 외국인이 무선허가자에 대해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지분 그대로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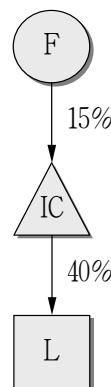
즉, 외국인 투자지분율 = 18%(승수 적용 없음)

→ 본 법 310(b)(3)조의 20% 제한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투자 허용

(ii) 매개회사를 통해 무선허가자에 대해 지분을 보유한 경우

a) 외국인 투자자가 매개회사에 대해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 승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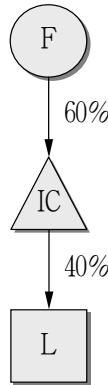
– 외국인 투자자 F가 매개회사 IC를 통해 무선허가자 L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F의 IC에 대한 지분은 15%이고 IC의 L에 대한 지분이 40%인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율 = 15% × 40% = 6%(승수 적용)

→ 이 경우 본 법 310(b)(3)조 해당, 따라서 동 조항의 투자지분 20% 제

- 한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 허용
- 외국인의 지분율은 6%이며, 이 경우 외국인 회사 F는 무선사업자 L에 대한 통제력이 전혀 없으며, 단순한 소액투자임
 - b) 외국인 투자자가 매개회사에 대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있는 경우 → 승수 적용 안함
 - 외국인 F의 매개회사 IC에 대한 지분이 60%이고 IC의 무선허가자 L에 대한 지분이 40% 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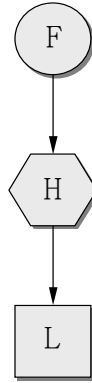


외국인 투자지분율 = 40%(승수 적용 안함)

- F의 L에 대한 영향력이 매개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 매개회사에 대해 외국인의 경영권 행사가 가능함으로 외국인의 무선허가자에 대한 영향력이 희석되어진다고 보지 않음, 즉, 승수 적용 안함¹¹⁾
- F의 L에 대한 지분율은 40%, 즉 본 법 310(b)(3)의 20% 제한 선을 넘은 경우로써 외국인의 투자 불허

11) 외국인이 투자한 매개회사의 형태가 insulated limited partnership인 경우,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50% 이상이어도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사업형태이기 외국인의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 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승수 적용을 한다.

(2) 본 법 310(b)(4)조 적용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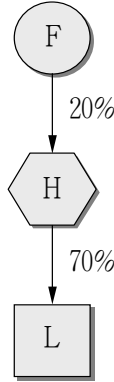
비고: F = 외국인 투자자, L = 무선허가자(사업자), H = 지주회사

- FCC는 미국 내 서 조직된 지주회사(domestically organized holding company)를 통한 직접 및 간접 투자인 경우에는 본 법 310(b)(3)조 보다 본 법 310(b)(4)조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음¹²⁾
- 외국인은 본 법에 의거 25%까지 투자 할 수 있는바 투자 제한 선을 넘는 경우 FCC는 공익성 심사 또는 실질적 지배력 심사를 시행, 투자허용 여부 판단
- FCC는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상향조정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음
- 이 경우 외국인의 무선허가자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의 유무 여부에 분석의 초점이 모아짐

(i) 외국인 투자자 F가 지주회사 H에 투자하였으며, H는 무선허가자에 대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등, 경영권 또는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예

12) "By its express language, section 310(b)(4), rather than section 310(b)(3), applies in situations where the foreign entity holds equity or voting interests in a domestically organized holding company that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the licensee." FCC Foreign Ownership Guideline,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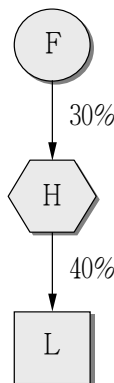
를 들어 F가 H에 20% 투자하였고, H는 L에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율 = 20%(승수 적용 안함)

→ F의 L에 대한 지분율은 20%, 즉 본 법 310(b)(4)조의 25% 투자 제한선을 넘지 않기에 투자 허용

(ii)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가 무선허가자에 대해 보유한 지분이 50% 미만이나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의 영향력을 100으로 봄;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 F가 지주회사 H에 30%를 투자하였고, H는 무선허가자 L에 대해 40%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율 = 30%(승수 적용 안함)

- F의 L에 대한 지분율은 30%, 즉 본 법 310(b)(4)조하에 25% 투자 제한선을 넘긴 경우
- FCC의 공익성 심사 및 실질적 지배력 심사를 통해 투자 허용여부 판단
- 즉, 수직적 소유사슬(vertical ownership chain) 구조의 하부단계에 있는 회사 L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H에 대해 바로 윗 단계에 있는 회사 F에 대한 지분계산을 할 경우, 보유 지분에 대해 승수를 적용하지 않음; 즉, 하부 단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H에 대한 F의 의결지분(voting interest)은 사슬의 다음단계로 온전히 이어짐¹³⁾

- (iii) 본 법310(b)(4)조에 의거 외국인 지분 계산 시 승수 적용을 하는 경우
 - 무선허가자의 모기업(parent company)에 투자한 외국인이 격리된 합자회사(insulated limited partnership)의 형태를 한 경우, 즉 동 외국 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이어서 투자한 모기업의 경영권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증명되는 경우;

예컨대: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F는 미국의 무선허가자 L에 투자한 기업 IC (모기업 IC)에 대하여 비통제 의결권 40%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 회사 F에 투자한 외국인 유한책임사원의 각각의 의결지분 총 합은 25% 이다. IC의 외국인 의결주는 회사 F의 총 외국인 투자분(25%)과 F의 IC에 대한 의결주(40%)를 곱한 값이 된다. 즉, IC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의결권은 $10\%(25\% \times 40\% = 10\%)$ 가 됨

- 한가지 유의할 점은 무선허가자의 모기업(parent company)에 투자한 외국인이 일반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의 형태를 한 경우, 즉 외국투자자가 무한책임사원(unlimited partners)인 경우 승수 적용을 할 수 없음;

13) "...the Commission does not apply the multiplier to any link in the vertical ownership chain that constitutes a controlling interest in the company positioned in the next lower tier. Thus, a controlling stockholder's foreign voting interest flow entirely to the next tier of the ownership chain." FCC Foreign Ownership Guideline, p.17

예컨대: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F는 미국의 무선허가자 L에 투자한 기업 IC(모기업 IC)에 대하여 비통제 의결권 40%와 의결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 회사 F에 투자한 외국인 무한책임사원의 보유 지분은 10%이다. 이런 경우, 합명회사 F가 모기업 IC에 보유하고 있는 40%의 지분은 외국인 무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의 것으로 여겨지기에, 40%로 계산
 → FCC는 본 법 310(b)(4)조에 의거, 무선허가자에 대해 외국인 유한책임사원(foreign limited partners)들이 해당회사(partnership)계약에 의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들어있는 합자회사계약(unlimited partnership agreement)에 합의했다는 경우를 증명했을 경우에만 승수 적용

○ 그 외 외국인 지분계산 시 고려사항

- FCC는 의결주(voting interest)와 단순한 소유지분(equity)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지분을 계산 할 때 이들의 계산을 각각 따로 하고 있으며, 본 법 310(b)조의 적용 시 그 총합을 고려함
- FCC는 옵션, 워런트, 전환사채 같은 전환권들은 행사되기 전까지는 지분 계산시 고려하지 않음(다만 본 법 310(b)(4)조에 의거, 무선허가 신청자 또는 심사 요청자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안)
- FCC는 본 법 310(b)(3)조와 310(b)(4)조의 제한사항을 별개로 취급하므로 310(b)(3)조에서 계산된 외국인 지분과 310(b)(4)조에서 계산된 외국인 지분을 합산하지 않음

○ 공익성 심사 및 실질적 지배력 심사

- FCC의 공익성 심사는 case-by-case로 심사하며, 심사 시 고려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함

(1) 통제력

- FCC가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변수는 외국인 투자자의 무선허가자에 대한 통제력인데, 동 통제력의 정도에 따라 본 법 310(b)(3)조 및 3109b(4)조의 의거 분석¹⁴⁾
- FCC는 법률상 (de jure) 통제 및 실질적 (de facto) 통제, 소극적 통제 세가지 유형을 고려

(i) 법률상 통제

- 단일 주주가 어느 한 기업의 의결주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FCC는 분석의 목적상 전환권들이 실제로 전환되기 전까지 법률상 통제의 개념에 넣지 않음

(ii) 사실적 통제

- 사실적 통제는 무척 복잡한데, 사안별 결정이 요구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
-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항들은 다음의 여섯가지 질문에서 파악됨:
 1. 무선국 면허자가 모든 설비와 장비를 자유롭게 사용하는가
 2. 일상적인 운영을 누가 통제하는가
 3. FCC에 대한 신청서의 준비 및 제출을 포함하여 정책 결정을 누가 결정하고 수행하는가
 4. 인력의 고용, 감독 및 해임을 누가 담당하는가
 5.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 재무상 채무 변제를 누가 담당하는가

14)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제력을 계산하는 경우 외국인이 무선사업자에 대해 비통제지분을 직접 갖고 있는 경우 및 무선허가자에 대해 비통제지분을 갖고 있는 매개회사에 대해 비통제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본 법 310(b)(3)조 해당되며, 반면, 무선허가자에 대해 통제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해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본 법 310(b)(4)조 해당

6. 설비 운영으로부터 도출 되는 수익과 이윤을 누가 취득하는가

(iii) 소극적 통제

- 소극적 통제는 결정을 방해 할 수 있으나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행위를 강제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실체에 의해 행사되는 경우를 말함
- 신청자의 대표성, 실제 행동, 관련 기업지배구조 및 계약규정 고려
- 신청자의 미국 모회사의 지분에 대한 복잡한 수직적 소유구도 고려
- 무선사업자의 실제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투자자들 간의 통제 관계 고려
- 전체 정황적 상황 고려

(2) 투자자의 국적

- FCC는 공익성 심사 이외에도 WTO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미국 내 투자를 차별함
- 주요 사업지(principle place of business)라는 기준을 적용, 투자자의 국적 또는 출신 시장이 WTO 회원국인지를 판단
- 투자자가 WTO 회원국인 경우,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시장경쟁차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반박할 수 있는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 허락됨
- WTO 회원국 투자자의 미국시장에서의 투자가 시장경쟁에 위협적인 요소라고 판단되어지면 FCC는 (동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통신사업자에 대해 구체적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 투자가 아주 위협적인 경우라고 판단되어지면 FCC는 무선허가의 신청을 취소하거나 허가를 기각할 수 있음
- WTO 비회원국 출신의 외국인 투자자는 무선허가 신청시 WTO회원국이 부여받은 반박할 수 있는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의 혜택을 받지 못함

- WTO 비회원국 출신의 투자자는 공익성 심사외에 FCC가 제시하는 “유효 경쟁 심사”(effective competitive opportunities “ECO” test)를 통과해야만 본 법 310(b)(4)조의 25% 투자제한선의 상향조정을 허락받을 수 있음
- 국적을 FCC에 통보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는 WTO 비회원국 투자자로 간주

(3) 투자자의 주요 시장

- 주요 시장을 식별하는데 에 주요 사업지(principal place of business) 테스트 적용
- FCC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주요 시장과 국적을 동일하게 여기지만, 투자자의 등록 주소에 의존하여 투자자의 주요시장을 결정하지 않음
- 투자자의 주요시장을 고려하는 요소는, 법인 설립지, 투자자의 국적, 본사가 거주하는 국가, 생산, 유통, 전송 등 실물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국가, 해당사업의 매출 및 수익의 과반수가 창출되는 국가임
- 식별되지 않는 외국 투자자 또는 출신시장은 WTO 비회원국 출신으로 간주
- FCC는 미국시장의 경쟁여건에 위협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반독점 경쟁이론에 근거로 판단하며 관련 투자자의 국적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¹⁵⁾

(4) 그 외 고려 사항

- FCC는 이외에도 공익, 국가안보, 외교정책, 법 집행, 통상정책 차원의 고려를 함, 만약 행정부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의의를 제기할 경우 FCC는 이들 이슈에 관한 전문성을 해당 기관에 양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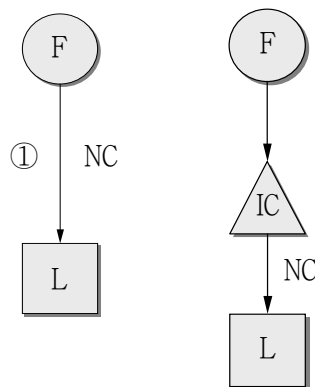
15) FCC Foreign Ownership Guidelines, p.13

○ 외국인의 FCC 무선허가사업자에 대한 합법적 투자 방법

- FCC는 본 법 310(b)(4)조에 의해 외국인의 무선허가자에 투자한 지주회사에 대해 100%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조항을 보면:
- “공익에 부합하는 한, 본 법 310(b)(4)조에 의해 외국인은 기간사업자 또는 무선허가자에 대해 통제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에 대해 직, 간접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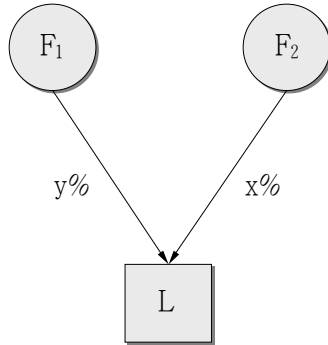
“Thus, a foreign government, individual or corporation may own, directly or indirectly, up to 100 percent of the stock of a U.S. holding company that holds a controlling interest in a common carrier or aeronautical radio license provided that the Commission does not find the foreign ownership to be in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est”(FCC Foreign Ownership Guidelines, p.10)

(1) 본법310(b)(3)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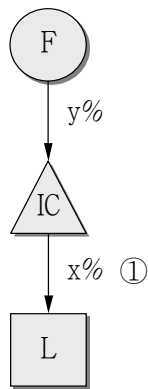


- NC: 비통제 지분
- ①이 20% 미만인 경우에도 통제지분(controlling)이면 310(b)(4) 적용

• 본법310(b)(3)조에 따른 지분 계산



- 외국인지분: $x\% + y\%$, 단 $x + y \leq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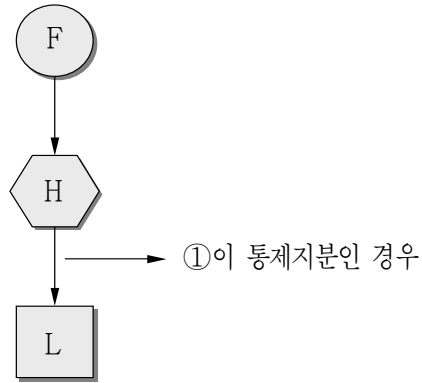
- y가 비통제지분 $\Rightarrow x\% + y\% = z$

- y가 통제지분 $\Rightarrow x\% =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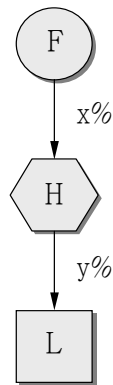
단, $z \leq 20\%$, $F_1, F_2, F_3... \sum z \leq 20\%$

①이 통제지분이면 310(b)(4) 적용

(2) 본법(310)(b)(4)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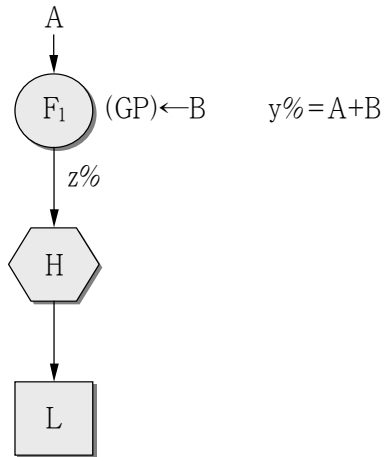


• 본법(310)(b)(4)조에 따른 지분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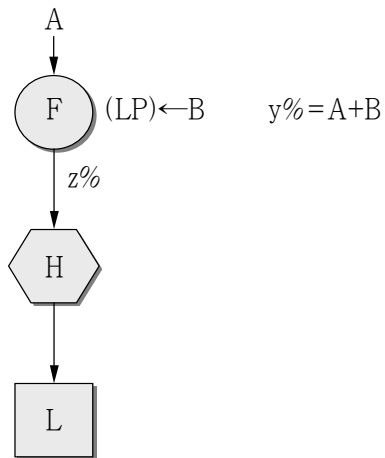


- y가 De Jure, De facto control인 경우 외국인지분은 x%

• 계산법



- GP-무한책임사원인 경우 외국인지분(경영권 행사)
외국인 지분 $x = z\%$



외국인지분 $x = y\% \times z\%$

- LP 유한책임사원(경영권 불행사)
 $x > 25$, 공익성 심사 \Rightarrow F가 WTO비회원국이면 ECO Test